

열람서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0 0 0
확 인 자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장	0 0 0
작 성 자	현장대응단 보상기획	0 0 0



## 제2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 2. 22.(목)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제2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2024. 2. 22.(목) 10:00~12:00
- ◆ 심의장소: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상황실
- ◆ 참석위원: 5명 ※ 간사: ○○○(119광역수사대장)/ 보상담당:○○○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직위)
1	위 원 장	○ ○ ○	○○대 ○○○○대학원(교수)
2	부위원장	○ ○ ○	○○○○ ○○(변호사)
3	위 원	○ ○ ○	○○○○(○○)○○○(변호사))
4	위 원	○ ○ ○	○○소방서(○○○○○○○)
5	위 원	○ ○ ○	○○소방서(○○○○○○○)

- ◆ 심의안건: 4건 / 청구금액 금 ○○,○○○,○○○원
- ◆ 심의결과: 인용 2건, 기각 2건 / 금 ○,○○○,○○○원

- ① 2023. 01. 17. 00소방서 화재출동 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해 승용차 강제처분  
심의결과 : 기각 결정(기각 5명) , 다음 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 ② 2023. 11. 29. 00소방서 구조출동 내부 신원확인을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  
심의결과 : 인용 결정(인용 5명), 금 0,000,000원
- ③ 2023. 12. 24. 00소방서 화재출동 인명검색을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5세대)  
심의결과 : 기각 결정(기각 5명)
- ④ 2024. 01. 26. 00소방서 구조출동 구조대상자 구조위해 화장실 문 강제개방  
심의결과 : 인용 결정(인용 4명, 기각 1명), 금 000,000원

## 진행사항 설명

[○○○ 간사] 제2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석자 확인 및 위원 소개  
- 심의위원 총 7명 중 5명 참석 / 간사 1명, 보상담당 1명 참석

## 성원 보고

[○○○ 간사] 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됨을 위원장님께 보고함

## 개회 선언

[○○○ 위원장] 제2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제29차 심의안건

[○○○ 위원장] 제2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안건 4건. 1호 안건 설명요청

## 제1호 안건 심의

[000 보상기획담당] 1호 안건 설명

2023. 01. 17.(화) ○○소방서 화재출동 중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 승용차에 강제 처분한 건으로 청구인은 000 차주의 자동차 보험사인 ○○○○○○○○○(○) 보상금 금 00,000,000원 청구함(보험자 대위)  
발생경위는 ○○○○빌 000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빌라 거주자가 신고 하였고 2층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 지휘차가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 차량을 파손. 차량은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음.

조사결과 000호 거주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함. 강제처분 후 자동차 보험을 접수했으나 지휘차의 고의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측에서 보험금 부지급 통보함 ○○○ 측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화재건물(○○○○○) 소유자인 ○○ 측에 요청하려 하였으나 ○○측 보험사에서도 방화추정 화재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함. ○○○ 자동차 보험사는 지휘차의 고의성으로 ○○○ 자차

보험으로도 수리비 지급 불가하다며, 서울시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함.  
원인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 가능여부가 쟁점임.

사진은 ○○○ 차량 강제처분 당시와 차량 파손 및 수리 후 모습임

[000 위원장] 1호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요청드립니다.

[000 위원]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그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봄.

[000 간사]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수리비를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저희(서울시)에게 할 수도 있음(선택권 있음). 원인자에게 우선 청구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청구가 들어오면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 심의안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음

[000 위원] 법령에 적법한 강제 처분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위원장] 000 위원님은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000 위원] 손실보상제도는 소방대원의 적법한 구조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인 특별한 희생을 보호하는 것임. 보험사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공적으로 너무 많은 구상 업무와 소송 등을 짊어지지 않을지 우려됨

국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보호임. 국가는 그것에 집중하고 구상권 등의 업무는 보험사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기각의견.

[위원장] 000 위원님은 기각의견

[000 간사]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지휘차 고의성 때문이었고 ○○○○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음.

판결이나 소방기본법 등에 손실보상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나 보험사 등의 우선순위를 명시해 주면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 아쉬움이 있음.

원인자에게 청구가 먼저라든지, 보험사가 있으면 보험사가 우선이라든지...

[000 위원]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이 맞는지 어떠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서 좋을 듯함. 보험과 손실보상의 관계를 정리하면 좋는데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000 의원] 강제처분 사진을 한번 보면, ○○○차량이 주차장을 조금 벗어나 있다. 주차라인 안으로 넣었으면 강제처분 없이 구조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과연 적법한 주차인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000 간사] 선 안에만 넣었으면 일부 인용도 논의할 수 있어보임.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음

[위원장] ○○○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음.

왜 범퍼를 안쪽으로 넣지 않고 저렇게 주차를 했는지는 밝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구인 쪽에서 얘기할 문제고 일단은 우리는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한 것이 확인된 이상 전액을 인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음

일단 기각을 하고 보험사랑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인용을 하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0]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율이 나눠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험사랑 상의를 해 봐야 하니까 그 부분을 상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들어오든지, 전체적으로는 지급되는 것은 결정이 됐으나 주차선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달해서 진행을 해보겠음

[위원장] 그러면 1호 안건은 기각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

## 제2호 안건 심의

[000 보상기획담당] 2호 안건 설명

2023. 11. 29.(수) 18:30경 ○○소방서 구조출동 건으로 신고자의 주소 오류로 출동과 무관한 세대인 000호의 문을 개방한 건으로 000호 소유자가

문 수리 후 금 0,000,000원을 청구함. 발생경위는 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로 소방대가 현장도착하여 000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내부 반응이 없어 아들에게 전화하여 현장 상황을 설명함. 아들이 강제 개방을 희망하여 소방대원이 아버지의 집이 000호인지 2회 확인 후 현관문 개방했으나 내부에 사람 없었고 현관문 조치 중 \*\*\*호에서 경찰이 신고자의 아버지를 발견함.

사진은 현관문 교체 전후 모습임

[000 위원] \*\*\*호 원인자는 수리비 지급불가로 되어있는데 이유는?

[000 보상기획담당] 조사과정에서 청구인(000호 거주자)에게 \*\*\*호에 현관문 교체비용 청구했는지 문의하니 소방서에서 문을 파손하고 왜 \*\*\*호에 청구를 해야 하나며, \*\*\*호는 비용지급할 상황이 아니어서 보상금 청구를 했다고 함

[000 위원장] 2호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사진을 보면 일반문을 완전히 전부 다 뜯어고치신 것 같은데, 방화문으로 바꾸신 것 같다. 원상복구로 해야 하는데...?

[000 간사]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지 못한 상황임

[000 위원] 감정평가는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음

[000 간사] 청구금액이 천 단위가 넘으면 감정평가를 요구해 볼 수 있는데 백만 원, 이백만 원을 가지고 몇십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구상권 청구도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이 적으면 구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비용이 더 들어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임

[000 위원] 000호 거주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이 건은 인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파손 전과 수리 후 문의 품질이 달라지긴 했지만 인용의견임

[000 위원] 이러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같은 문으로 교체했을 때의 견적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000 위원] 수리 전후가 확연히 다르다면 청구금액을 다 지급할 수는없다

는 것을 청구인에게 예고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음.

[000 위원] 현장대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보상해 준다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000 간사] 현장활동 대원들에게 손실보상 관련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음. 그리고 전후가 너무 다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래의 문으로 고쳤을 때의 견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000 위원장] 네 간의 하계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2호 본건은 위원님들 전부 인용이신가요?

[위원 전원] 네 인용 의견입니다.

[000 위원장] 위원님 전원 인용 의견이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호 안건 심의

[000 보상기획담당] 3호 안건 설명

2023. 12. 24.(일) ○○소방서 화재출동 중 내부 인명검색을 위해 건물 전체 세대 문개방 건으로 청구인은 건물 소유자의 아들로 어머니의 위임을 받아 전 세대 현관문 교체 후 B00호 수리비 금 0,000,000원을 청구함.

발생경위는 ○○구 다세대 주택 000호에서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작동시킴으로 인해 화재발생함. 인명검색 위해 지하 1층~지상 2층 총 6세대 전 세대 문을 개방함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장 인명검색 철저 지시 있었음

청구인이 화재발생 전 세대 문 교체하고 000호 수리비 제외 후 보상금 지급 청구함

[000 위원장] 3호 본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반려묘에 의한 화재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기각 의견.

[000 위원] B01호 거주자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면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임차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하는 것이 맞음. 보증금 부분을 제대로 계약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책임이기에 기각 의견임

[000 위원장] 000위원님, 000 위원님 두 분은 기각 의견.

000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000 위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수리비 처리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각 의견임.

[000 위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으로 임차인이 돈이 있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000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인용 의견이 주었는데, 왜냐하면 원인자가 따로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원인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것은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기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음. 그렇지만 보증금이 있어서 상계가 쉽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인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 그러면 구상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음. 법적인 근거는...

[000 위원] 특별한 희생인지의 여부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이런 걸 대비할 수 있었는데...

[000 위원장]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000 간사] 특별한 희생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000 위원] 행위적 권리가 있으면 그것에 맡겨야함

[000 간사] 실질적으로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음

상계권으로 처리하면 되니...

[000 위원장] 그럼 전부 기각 의견이시니, 3호 안건은 기각되었습니다.

#### 제4호 안건 심의

[000 보상기획담당] 4호 안건 설명



2024. 01. 26.(금) ○○소방서 구조출동 중 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해 ○○○ 화장실 문개방 건으로 ○○○ 직원인 청구인은 화장실 문 교체 후 수리비 금 000,000원을 청구함.

발생경위는 '24. 1. 26.(금) 15:04경 ○○○ ○○ 지하 2층 여자화장실 내부에 여성 1명이 쓰러져있는데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했음. 소방대원이 현장도착 시 구조대상자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문 쪽으로 기대어있어 화장실 문을 강제개방하여 구조함. 문은 안쪽으로 밀어 여는 구조였음. 소방대원은 현장도착 시 ○○○ 관계자에 의한 초동 강제개방 조치로 문이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었고 문 틈새로 구조대상자가 쓰러진 모습이 보이는 상태였다고 함. ○○○ 측은 구조대 도착 당시 문이 거의 파손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며, ○○○ 측 무과실로 자체 보험처리 불가하고, 구조대상자의 고의성이 없어 구조대상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어 수리비 000,000원을 청구함

[000 위원장] 직원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맞는지?

CGV에서 직원에게 물어내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걸림

[000 위원] 금액이 적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가능할 것 같음.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지?

[000 보상기획] 지급계좌는 ○○○계좌임. 직원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000 위원장] 우리가 지급을 하면 회사로 지급한다는 거죠

[000 보상기획] 네

[000 위원] 우리 직원들이 출동해서 활동한 상황이라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보험 측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문을 강제로 흔들다가 파손되면서 열렸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만약 그랬다면 보험에서 해줬을 것 같은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 대원이 도착해서 문개방을 했으니 우리 측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소방대 도착 전에 ○○○에서 문을 개방했다면 보험에서 처리했을 것 같음

[000 위원] 보험은 시설물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해주겠지만 사람이 쓰러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

[000 위원] ○○○는 공중접객업자로서 비상 상황 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 있어야 함. 일종의 넓은 의미의 고객보호 의무 있음. 법적으로 과실로 볼 수 있다.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의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도 문제가 있고...

[000 위원] 저는 인용 의견임. 다만, 도착 전에 문이 파손될 경우 ○○○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텐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000 간사] 구조대원들이 현장 도착 당시 문이 파손됐다면 사진을 찍는 등 문이 이미 파손됐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000 위원] 사실 확인이 안 되더라도 ○○○가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과실일 수 있음.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가 넓은 의미에서 원인제공자임. 마스터키로 열면 될 것을 화장실 문을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큰 과실임

[000 위원] 화장실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의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000 위원] 여자화장실을 마스터키로 열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마스터키는 아닌 것 같다.

[000] 밖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000 위원]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마스터 키가 있으면 보안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공중접객업으로서 영화관은 고객 보호의무가 있으니 강제개방이든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일차적인 보호 의무는 영화관에 있다. 영화관이 원인제공자다. 이렇게...

[000]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화장실이 원래 막힌 것인지...

공중 접객시설로 자체 개방 체계 갖춰야 한다. 어떠한가요?

[000] 전자장비로 도어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외부에서 열 수 없게 하기 위험일 수 있음. 칸막이로 완전히 막는 이유가 불법카메라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위를 뚫어 놓으라 하고,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게하면 더 문제일 수 있음.

[000] 그럼 문을 연다기보다는 자체 비상 구조시스템은 어떠한지?

[위원장] 그럼 1차적 구조의무가 CGV에 있는 것은 맞을까요?

[000 간사] 안전에 대한 의무가 저는 미끄럼 방지 등이라고 생각을 했지, 사람이 다쳤거나 쓰러졌을 때 구조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임

[000 위원] 화장실에서 용변 중에 쓰러질 사람을 옆두에 두고 구조할 체계까지 갖추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이야기임. ○○○의 1일 방문객이 수천 명일 텐데 일일이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 않는지?

[000 위원] 그 정도까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 발생 상황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의 책임에 대한 그러한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000 위원] 병원이라면 당연히 있겠죠. 화장실 응급 호출도 있고...

이렇게되면 병원, 극장, 그러면 식당은 뭐 다를까요??

호텔은 뭐가 다르겠어요? 다 그런 시스템을 뒤야 된다는 얘기인데, 화장실까지 관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봄.

[000 위원] 그렇다면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조금 맞지 않다고 봄.

[000 위원장] 소방 활동 중 하나가 위험한 구조 활동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은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손실 보상 요건은 갖춘 것 같고 결국은 파손이 돼서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만 남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그러면 000 위원님 기각 의견, ○○○ 의원님은 인용의견.

[000 위원] 저는 인용의견이고, 향후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시설물들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 넣어서 그런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저도 인용의견.

4호 본건은 1명 기각의견, 4분 인용의견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심의 결과

[000 간사] 제29차 손실보상위원회 총 4건 중 2건 인용, 2건 기각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 폐회 선언

[000 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2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